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8호로 2013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괄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법률 용어 순화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별 개요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일반회계 출연금과 용자회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2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운전·시설·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2005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청사건립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을 적립중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청사건립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192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구 청사 건립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임.

- **체육진흥기금**은 구민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 사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음.

경륜지원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53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요트부 운영지원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2013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시달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의 ‘일몰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침

□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원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엄격한 이행필요)

-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함

-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 명시

○ 연장결정 절차

-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